

# 「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」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117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4년 8월12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
## 1. 제안이유

- 가. 다문화학생, 특히 중도입국·외국인학생(이하 “이주배경학생” 이하 함) 증가율이 높아<sup>1)</sup> 한국어 교육 지원 강화 요구가 커짐
- 나. 의사소통 문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학생을 지원하고 단위 학교의 관련 업무 부담 경감과 교육과정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주배경학생 대상 한국어 집중 교육을 학교 편·입학 초기 단계에 제공할 필요 있음
- 다. 이주배경학생 한국어 및 학교생활적응 교육을 안정적 시스템을 갖춘 한국어교육 전문 교육기관에 민간 위탁하여 교육청이 성과를 관리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제로 운영할 수 있는 「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」를 추진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: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  - 1) 추진근거
    - 「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」 제7조(위탁형 한국어 예비학교), 11조의2(사업의 위탁)

1) 연도별 다문화학생수(2014~2023), 교육통계서비스(KESS, 한국교육개발원)

「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」

제7조(위탁형 한국어예비학교)

-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의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적응을 집중 지원하는 위탁형 한국어예비학교 (이하 "한국어예비학교"라 한다)를 운영할 수 있다.
- ③ 교육감은 제1항의 한국어예비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의2(사업의 위탁)

-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센터 및 다문화교육 사업의 일부를 다문화가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② 교육감은 사업의 위탁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2) 추진 필요성

- (국가적)이주배경학생 위한 “한국어 교육체계 전면 강화” (교육부, 2023.9.2)
- (사회적)다문화사회 진입 대비 이주배경학생 지원대책 강화
- (전문적)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이주배경학생 입학 초기 한국어 집중 교육 지원 체계 강화
- (현장요구)학교생활적응을 위해 입학 초기 한국어 집중 교육 필요

<b>현장 의견</b>	<p>▶ <b>현장 의견: 학교 입학 초기 한국어 및 학교생활적응 지원 교육 강화 필요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분리 기간 최소화) 특정 국가 학생들 중심의 모국어 사용 현상 심화로 장기간 위탁보다 단기간 집중 교육하는 것이 한국어 사용능력 향상과 재적교 복귀 후 학교생활적응 과정에 도움이 됨</li> <li>- (접근성 고려) 초·중·고 학생 특성상 안전한 등하교가 가능한 거리에 위치</li> </ul>
<b>실태 조사</b>	<p>▶ 이주배경학생 교육 관련 가장 힘든점 (조사 기간: 2024. 5. 20.~5. 24.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①의사소통(한국어 부족) &gt; ②교육지원인력 부족 &gt; ③학부모와의 소통 &gt; ④학습지도 &gt; ⑤심리정서 불안 &gt; ⑥통계 파악 어려움 &gt; ⑦기타</li> </ul>

다.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: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 운영 전반

- 학교 운영·관리 등에 관한 모든 사항(교육과정 기획·운영, 교재 및 자료 구입, 예산 집행 등 학교 운영 전반)
- 교육활동 기록(출결, 과정중심평가 등) 송부, 학생 및 학부모 상담, 재적교 학사일정 안내 등 개별 학생 관리

- 한국어교육, 학교생활적응교육, 진로 교육 등에 관한 사항
- 외부 강사 채용 및 강사료 지급, 멘토링 연계에 관한 사항
- 생활지도 및 폭력예방, 안전교육,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사항
- 행사 중 사고 발생시 대책 및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
- 한국어 예비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- 회계 처리 및 기타 교육청이 지정하는 사항 등

라. 민간위탁 기간: 2025. 3. ~ 2027. 2. (2년)

마. 수탁자 선정방식: 공개 모집 및 협상에 의한 계약

- 「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운영 지침」 준용
-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: 9명 이내
- 공모후 접수된 제안서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평가요소 및 평가 항목에 따라 평가, 선정

바. 예산 규모: 금800,000천원(금팔억원)

- 연간 운영 기관 수: 2개 기관 예정
- 산출 근거: 2억×2기관×2년=8억
- 1기관 기준 추계액: 금199,432,000원(금일억구천구백사십삼만이천원)\*

※ 1개 기관(1년 운영 기준)의 추계액은 한국어 예비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보조(「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」 예산 지원 기준 참고), 강사수당, 학급 운영비, 급식비 지원, 시설관리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며, 「한국어 예비학교」 운영 예정원가조사보고서에 근거함

### 3. 참고사항

가. (별첨1)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 민간위탁 추진계획(안)

(민주시민생활교육과-16415, 2024. 7. 29.)

나. 관계 법령

- o 「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」 제7조, 제11조의 2
- o 「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